

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·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2024. 6. 22.(토) 시행하는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·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0일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시험일시: 2024. 6. 22.(토)

- **9시 20분까지 입실 완료** (시험장개방: 08:00)

2. 시험시간 및 장소

구분	응시직렬	응시번호	응시인원	시험시간	시험장소	
					학교명	소재지
공개경쟁 임용시험	교육행정	일반	24110001~24110338	338	노형 중학교	제주시 노형1길 28 ☎(064) 740-8901
		장애인	24120001~24120005	5		
		저소득층	24130001~24130004	4		
	전 산	24210001~24210023	23	10:00~11:40 (100분)		
	공업(일반전기)	24310001~24310003	3			
	보 건	24410001~24410011	11			
	시설(건축)	24510001~24510004	4			

3. 응시표 출력

가. 출력기간: 2024. 6. 10.(월) 10:00 ~ 2024. 6. 22.(토) 10:00까지

나. 출력방법: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(<https://edurecruit.go.kr>) → 지방공무원 선택
→ 지도에서 "제주"선택 → 바로가기 →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(응시표출력)

※ 응시표는 이면지를 사용하여 출력할 수 없으며, 응시표 여백에 낙서 및 메모 불가

4. 응시자 준수사항

【일반사항】

가. 수험생은 지정된 시험일시, 장소에서만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나. 시험당일 09: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([응시자에 한해 08:00부터 시험실 개방](#))

※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(09:50분경)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
다.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

마. 본인 확인을 위하여 **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**해야 합니다.

※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주민등록번호 미포함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)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

※ 공무원증, 재외도민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원서접수 이후 개명(改名)한 경우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초본 등) 반드시 지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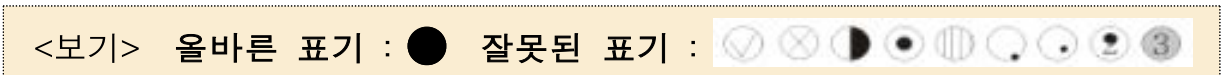
바.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,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(특점 불인정 등)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사. 시험시간 중 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 PC, 스마트워치, 스마트안경, 이어폰, 스마트밴드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DMB 플레이어 등)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.

- 아. 시험시간 중에는 **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 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**재입실이 불가**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**시험본부에서 정한 장소에 대기**하여야 합니다.
- 자.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차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※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없으므로 반드시 **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**통신,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 및 스톱워치, 전자시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 (★아날로그 시계만 허용)**
- 카.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【답안지 기재 및 표기】 ★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(수정액 수정스티커 등 불가)

- 가. 특점은 답안지 리딩기계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'컴퓨터용 흑색 사인펜'을 사용하여 <보기>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



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**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(특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**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나.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**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**을 받을 수 있으므로 **각별히 주의**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답안지를 받으면 방송안내에 따라 성명, 응시직렬, 응시번호 등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**수험생 입실부터 답안지 표기요령 및 문제지 배부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으로 진행됩니다.**
- 라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 간의 일치 여부, 문제 누락·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- 다.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**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** 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※ **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**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. **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**
 - ※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수정테이프는 시험감독관이 제공하지 않으며, **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**합니다.
- 사. 답안지는 **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**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하단의 타이밍마크(■■■■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- 아. 답안지 작성이 끝나도 **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.**
- 자. 필기시험 문제 중 **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**하며,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(국어, 영어, 한국사 등 14과목)

【부정행위 등 금지】

가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제1항 제1호~제6호 위반행위

- **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**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,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제2항 제1호~제4호 위반행위

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정하여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행위
 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다.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※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(기재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및 등록 안내

- 가.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.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전일(2024. 6. 21.(금) 24:00)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, 가산비율,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나.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시기 바라며,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4. 6. 21.(금) 24:00)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다.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- 라. 가산점의 허위기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합격자 발표 안내

가.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

- 일시: 2024. 7. 4.(목) 10:00 ~ 2024. 7. 5.(금) 18:00
 -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(<https://edurecruit.go.kr>) 에서 본인 성적 확인
- 사전공개 관련 문의: 사전공개 기간 내
 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(064-710-0625)으로 유선문의

나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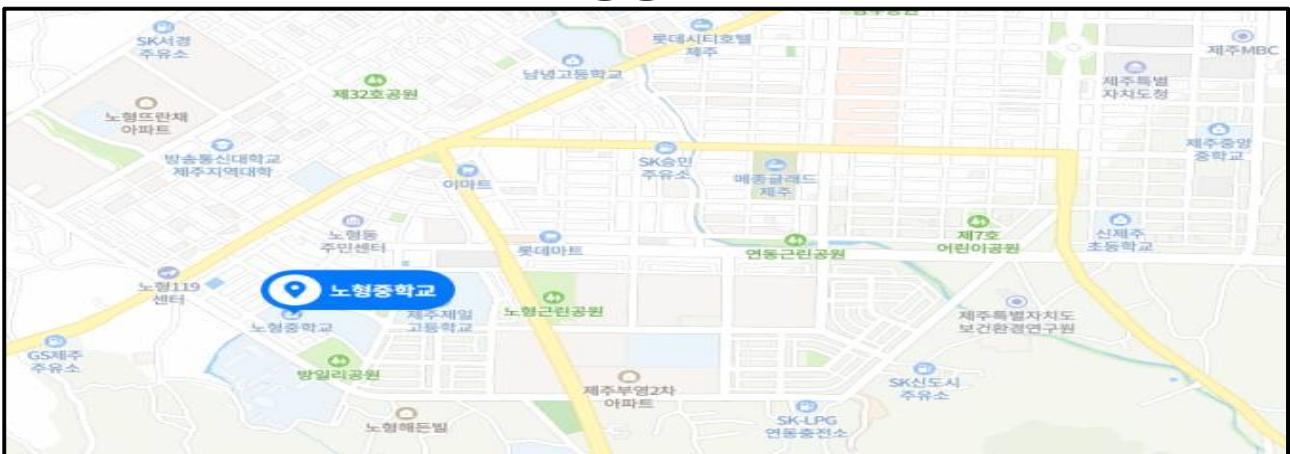
- 공고일시: 2024. 7. 10.(수) 10:00
- 공고방법: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(홈페이지)(<http://www.jje.go.kr>) 「뉴스/소식」
→ 「인사/채용/시험」→ 「시험정보」→ 「지방공무원임용시험」에 게시

다. 필기시험 성적 조회

-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4. 12. 31.까지,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4. 12. 31.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(<https://edurecruit.go.kr>)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7. 시험장 위치도

<노형중학교>



- ▶ 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길 28 (대표전화 ☎ 064-740-8901)
- ※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.